

의안번호	2212365
의 퇴 인	이재강의원
회 답 일	2025.10.31.
추계번호	25B455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5호나 목 신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5. “낙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을 말함 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 여구역주변지역(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조제5호나목 신설 (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낙후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행법상 낙후지역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

재정수반조문	지원내용
조세 및 부담금 감면(제5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5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 -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 -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편의 증진 사업 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제7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지,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가능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제71조)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가능 -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용자 비용 지원 등

-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여부,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지원항목, 지원비율,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여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군(7개)·구(3개)	읍(20개)·면(62개)·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인천광역시 (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북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4면·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2면·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9면·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포천시(1읍·9면·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4면·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동두천시(7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강원	춘천시(4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특별자치도 (27개)	원주시(3면·5동)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시(1동)	문곡소도동
	횡성군(1읍·7면)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군(1읍·2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홍천군(2면)	동면, 서석면
	철원군(1읍)	갈말읍
경상북도 (17개)	포항시(1읍·14동)	홍해읍, 죽도1동, 죽도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동, 상대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봉화군(2면)	춘양면, 소천면
경상남도 (6개)	사천시(1읍·3면)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진주시(2면)	정촌면, 금곡면
제주특별자치도 (3개)	서귀포시(1읍·1면)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1면)	한경면

자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